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8. 1.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공정한 법 집행	
1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p.1
2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p.2
3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추가	p.3
4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p.4
5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p.5
6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p.6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상 추가	p.7
8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	p.8
9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p.9
10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신설	p.10
11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p.11
12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p.12
13 등록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의 상향입법	p.13
14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	p.14
15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p.15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6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p.16
17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 의무	p.17
18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p.18
19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p.19
20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p.20
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등	p.21
22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p.22
기업지원	
23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p.23
24 국내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p.24
25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p.25
26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p.26
27 FTA 교육 지원	p.27
28 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	p.28
29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p.29
30 기관메일 주소 통합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p.30
31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엔진 개선	p.31
32 관세행정 개발원조사업 내실화	p.32
세정지원	
33 2018년도 탄력세율 대상 품목과 세율 확정	p.33
34 공장자동화기계 등 감면대상 확정	p.34
35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p.35

공정한 법 집행

① 관세포탈법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법인심사과, 042-481-798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한 한 물품: 물품을 <u>수입한</u> <u>화주</u> <u><신 설></u>	☐ 납세의무자 명확화 • 수입신고한 한 물품: <u>수입신고</u> <u>하는 때의</u> 화주 ☐ 관세포탈법 등에 대한 연대납세 <u>의무 부과</u> •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 감면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교사나 방조한 자 포함) 실제 화주와 함께 연대납세의무 부과 *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제외

○ (기대효과) 관세포탈죄 등 세액 포탈자에 대한 징수 강화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2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법인심사과 042-481-798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u><신 설></u>	☐ <u>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확대</u> •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 (기대효과) 관세공무원 비리 방지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4호 및 제111조제2항제4호,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3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추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

○ (기대효과) 관세 재조사 결정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4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 채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u>3억원</u> 이상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u>확대</u> • 채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u>2억원</u> 이상

○ (기대효과) 고액채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채납액의 징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16조의2제1항 개정)

5 해외 카드 사용 · 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7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해외 카드 사용내역 통보 • 신용카드 이용 해외 물품 구매내역 5,000불 이상 • <u>분기별</u> 통보	☐ 해외 카드 사용내역 <u>확대</u> 및 제출 주기 <u>단축</u>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u>건당 600달러 초과인 경우</u> • <u>실시간</u> 통보

○ (기대효과)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 (시행일) '18. 4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별표3 제40호)

6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내부가격 결정자료 • 내부가격 결정자료	☐ 내부가격 결정자료 <u>범위 명확화</u> •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을 포함한 내부가격 결정자료
<u><신 설></u>	☐ <u>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u> •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 (기대효과) 특수관계자 과세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합리화

○ (시행일) '18. 2월 잠정(「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상 추가

(감찰팀 042-481-77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형법 제127조, 제129조~제132조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제129조(수뢰·사전 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 제공), 제131조(수뢰 후 부정 처사·사후 수뢰), 제132조(알선 수뢰)	☐ 공무원 의제 <u>추가</u> • <u>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u>

○ (기대효과) 민간위원 또는 위탁받은 자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330조 개정)

8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

(통관기획과 042-481-78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사의 결격사유 •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u>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u>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u><신 설></u> • <u>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관세사의 결격사유 <u>강화</u> •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 <u>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기대효과)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

○ (시행일) '18. 1. 1.(「관세사법」 제5조 개정)

9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1,
감찰팀 042-481-77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u>금품 수수에 대해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u> •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 과태료

○ (기대효과)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277조의2 신설)

10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신설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과태료 신설 특정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대효과)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방지와 중고자동차 등 감시단속을 위한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제도 실효성 확보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277조제3항 개정)

11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u><신 설></u>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제3호)			
			● 중고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이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3호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시			☐ 개별 B/L오류 정도 반영(별표3 제7호)			
● 위반횟수(구간별)×해당구간금액			● 해당구간금액×오류건수별 부과배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행위자별 적하목록	행위자별 적하목록	행위자별 적하목록	행위자별 적하목록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 N)기준	관리번호(MR N)기준	관리번호(MRN)기준	관리번호(MR N)기준	관리번호(MR N)기준	관리번호(MRN)기준	
1건~50건	151건~100건	100건이상	1건~150건	151건~300건	301건이상	
(다만, 항공화물은 1건~250건)	(다만, 항공화물은 250건~500건)	(다만, 항공화물은 501건 이상)				

○ (기대효과) 1) 우범물품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2)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로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자발적 법규준수도 제고

○ (시행일) '18. 2월 예정(「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표2 및 별표3 개정)

12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u>확대</u> • <u>수입신고하는 탁송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u>

○ (기대효과)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특송화물 관리 실효성 확보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254조의2제3항 개정)

13 등록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u>보세사 재등록 금지</u> • 등록취소 후 2년 내 재등록 금지

○ (기대효과) 재등록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보세사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운영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65조제3항 개정)

14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3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공무원의 <u>총기</u> 휴대	□ 세관공무원의 <u>무기</u> 휴대 •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상 권총 또는 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 (기대효과) 사회안전 확보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267조 개정)

15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환급대상 원재료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u>명확화</u>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u>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u>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기대효과) 환급 가능범위 명확화

○ (시행일) '18. 1. 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6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7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납세자권리현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납세자권리현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 관세법·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납증 또는 분증 부정발급 등 관세환특법위반 사범 포함

○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10조제2항 개정)

17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 의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u><신 설></u>	☐ <u>세관장 의견서 송부 의무 등</u> •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 송부 - 이의신청인은 반대 증거서류나 증거물 등 제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u>단서 추가</u> (현행과 같음) - <u>이의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60일</u>

○ 《 기대효과 》 납세자 권익 보호

○ 《 시행일 》 '18. 1. 1.(「관세법」 제132조제4항 단서, 제1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8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법인심사과, 042-481-798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 보관 금지 •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 관서에 임의 보관 금지 •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때에는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 가능 - 일시보관 동의서 및 일시보관증 교부하여 보관 가능 -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되, 1회 연장 가능 -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하되 사본 보관 가능 (세관장은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 요구 가능)

○ (기대효과)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관세조사 투명화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14조의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2항 신설, 같은 훈령 제3항 및 제4항 개정)

19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7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 승인일로부터 <u>2개월</u>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u>확대</u> •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 승인일로부터 <u>3개월</u>

○ 《 기대효과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 시행일 》 '18. 1. 1.(「관세법」 제38조의4 개정)

20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기대효과)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 (시행일) '18. 2월 잠정(「관세법 시행령」 제27조)

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등

(심사정책과 042-481-77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u>단순 착오</u>로 확인되는 경우 -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신 설>	☐ 발급사유 <u>확대</u> (현행과 같음)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u>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u>로 확인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발급신청 절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기대효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일) '18. 1. 1.(「부가가치세법」 제35조)

22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법인심사과, 042-481-798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조사시작 <u>10일전</u>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u>연장</u> • 조사시작 <u>15일전</u>
☐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 조사 종료시	☐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u>명확화</u> • 조사 종료 후 <u>20일 이내</u>

○ (기대효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개정)

23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시행령이 정한기간 (예: 30일) 내 심사결과 통지 ⇒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 계산 및 환급 •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유효 - 다만, 사실관계 · 상황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효력 상실

- (기대효과) 환급신청 전 소요량 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과세관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시행일) '18. 7. 1.(「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신설)

24 국내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u>간이발급 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u> • 간소화 품목: 161개 품목* •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 국내에서 제조 가공 사실만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는 라면, 조제김 등 <u>공산품</u>에 대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손쉽게 발급하도록 개선 ※ 일반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는 현행과 같음 (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12종)

○ (기대효과) FTA 관세 절감효과(年 682억원*)를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Σ [각 간이발급대상 2016년 수출금액 $\times$ 7.2%p $\times$ FTA 활용시 관세율차이(MFN - FTA세율)]

○ (시행일) '17. 12월(「FTA관세특례 사무처리 고시」 개정)

25 품목별 인증수출자 협정 추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협정 추가 인증시 세관 제출서류 •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협정 추가 인증시 세관 제출서류 <u>간소화</u> • <u>제출 생략하고</u> 기존 자료로 확인

○ (기대효과) 인증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3억여원/년)

○ (시행일) '17. 12.(「FTA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26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관세청 모바일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정보 등 실시간 제공 • 중국과 한-중 FTA 및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 교환현황 및 중국세관 통관정보 • 세번별 지역별 다양한 FTA 수출입 활용 통계

- (기대효과) 수출한 물품의 특혜 관세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을 통해 중국 내 FTA 통관애로 해소* ,다양한 FTA 통계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비즈니스 기회 확보

* 現 중국 FTA 통관애로 대부분이 CO 발급정보 미확인

- (시행일) '18. 1. 5.

27 FTA 교육 지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FTA 교육과정 • 3개 분야 <u>10개</u> 과정	☐ FTA 교육과정 <u>추가</u> 개설 • 3개 분야 <u>12개</u> 과정 - <u>원산지증명서 작성실무, 품목분류</u> <u>추가</u>

○ (기대효과)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잠재력을 지원하고, FTA 활용 제고

○ (시행일) '18. 3월

28 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u>B/L분할·합병포괄신고</u> • 개별물품별 분할·합병
<신 설>	☐ <u>포괄보수작업 승인절차</u> • 반복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기간 단위 포괄보수작업 허용
☐ 국외반출신고 • <u>B/L단위 반송신고 및 보세운송신고</u>	☐ 국외반출신고 <u>간소화</u> • <u>개품단위 수출신고를 보세운송으로 봄</u>

○ (기대효과) 종합보세구역에 다국적기업의 국제물류배송센터 유치 지원을 위해 통관물류절차 간소화 및 일자리 창출

○ (시행일) '17. 11. 20.(「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37조 개정)

29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통관기획과 042-481-78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사 합동사무소 • <u>1개의 합동사무소만 설치 가능</u>	☐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u>분사무소 설치 허용</u> • <u>소속 관세사 수의 범위 내에 주 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가능</u> - <u>각 사무소에는 소속 관세사 1명 이상 상근</u>

○ (기대효과) 개인사무소나 합동사무소와의 계약을 선호하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보다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통관서비스 제공

○ (시행일) '18. 1. 1.(「관세사법」 제9조제3항 개정)

30 기관메일 주소 통합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정보기획과 042-481-7759)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전자메일주소가 공직자통합메일과 자체운용메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공직자통합메일(mail.korea.kr) 또는 자체기관메일(mail.customs.go.kr)	☐ 전자메일주소를 공직자 통합메일로 <u>일원화</u> • 공직자통합메일(mail.korea.kr)사용

○ (기대효과) 대민사용자에게 일원화된 전자메일 주소 제공, 이용자 메일 전송 속도 및 보안성 개선

○ (시행일) '18. 6월

31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엔진 개선

(정보관리과 042-481-76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청 국문홈페이지(산하세관 포함) 콘텐츠만 검색 가능 • '15년 홈페이지 검색솔루션을 교체하고, 색인DB를 재구축 •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는 검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 <u>검색기능 개선 및 검색범위 확대</u> • <u>민원인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추출·분석하여 색인DB 업그레이드</u> • <u>제목, 본문뿐 아니라 첨부파일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고,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도 검색대상에 추가</u>

- (기대효과) 1) 대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 가능해짐에 따라고객의 만족도 향상, 2) 국문홈페이지 외 영문홈페이지, 첨부파일까지 검색범위 확대로 사용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 (시행일) '18. 6월

32 관세행정 개발원조사업 내실화

(교역협력과 042-481-79)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국내 초청연수 중심으로 개도국 관세당국자 능력배양 사업 주력	□ 개도국 요청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원국 현지 기술원조 확대 • <u>개도국이 스스로 분석하여 요청한 지원필요 분야에 한국 관세청의 관세행정 전문가 파견</u>

- (기대효과) 1) 맞춤형 기술원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개발협력 역량 집중, 2) 현지 파견 사업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3) 개도국의 관세행정 개선 및 국제표준 도입을 지원하여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교역활동에 기여하고 통관애로 해소

- (시행일) '18. 연중

33 2018년도 탄력세율 대상 품목과 세율 확정

(세원심사과 042-481-77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u>특별긴급관세 대상</u> • 수입량 급증으로 벼, 찹쌀, 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 ☐ <u>조정관세 대상</u> • 찢쌀, 냉동명태 등 12개 품목은 10%~50% • 나프타는 0.5% • 냉동콩치 26% ☐ <u>할당관세 대상</u> •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등 69개 품목

○ (기대효과)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

○ (시행일) '18. 1. 1.(「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34 공장자동화기계 등 감면대상 확정

(통관기획과 042-481-78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감면대상 <u>79개</u> 품목	□ 감면대상 <u>68개</u> 품목 • 향온향습기 등 25개 품목 제외 •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 신설

○ (기대효과) 산업 및 기업 지원

○ (시행일) '18. 1. 1.(「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 개정)

35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통관기획과 042-481-78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 기관 • <u>일부</u> 연구중심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 기관 <u>확대</u> • <u>모든</u> 연구중심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포함) 등

○ (기대효과)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 (시행일) '18. 2월 잠정(「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개정)